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4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임원	8 인	2 인
참석임원	6 인	2 인

1.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14:00

(회의소집 통보일: 2024년 10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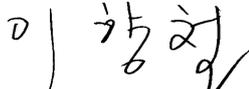
2. 장 소 : 이사회 회의실 (원격영상회의 병행)

3. 참석임원

- 이사(6인) : 조선영 이사장, 이종민 이사, 김기영 이사, 김영만 이사, 이향철 이사, 류희근 이사 (불참 : 이종수 이사, 배일환 이사)
- 감사(2인) : 배홍기 감사, 이동훈 감사 (불참 : 없음)

4. 안 건

- 제2024-38호: 광운대학교 2025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변경에 관한 건
- 제2024-39호: 법인 및 각급학교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1) 법인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2)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3)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제2024-40호: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기금 적립 및 인출 계획 변경에 관한 건
- 제2024-41호: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
 - 1)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 개정(안)
 - 2)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 3)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4)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폐지(안)
 - 5) 직원 명예퇴직 규정 개정(안)
 - 6)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7)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8) 감사 규정 개정(안)

간서명			
-----	---	--	---

- 제2024-42호: 법인 및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에 관한 건
 - 1) 법인 고정자산 변동(안)
 - 2)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안)
- 제2024-43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 제2024-44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제2024-45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 제2024-46호: 광운초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1) 교장 명예퇴직 제청(안)
 - 2)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안)
- 제2024-47호 :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5. 회의내용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이세원 간사가 참석 임원(이사 6인, 감사 2인)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입실함)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 전, 천장호 총장에게 대학 현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자, 천장호 총장은 신입교원 초빙, 신입생 수시전형 진행사항에 대해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광운대학교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고, 천장호 총장이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교육혁신 부문 우수 CEO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음을 추가 설명하고, 참석임원 전원 축하 인사를 전하다.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퇴실함)

조선영 의장은 이세원 간사에게 전차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를 지시하자, 이세원 간사가 보고하다.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혁
-----	---	-------	-------

□ 제2024-39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39호 안건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각 기관별로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대기 중이라고 보고하다.

(각 기관별 발표자들은 개별로 입실하여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응한 후 퇴실함.)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학교명	2024학년도 경정예산액	2024학년도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	1,339,342	1,245,462	93,880	제1차 추경
학교법인 수익업무회계	937,057	944,589	-7,532	제1차 추경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1,065,782	7,284,924	3,780,858	제1차 추경
광운대학교	130,075,222	122,482,872	7,592,350	제1차 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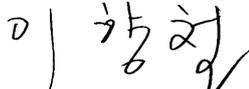
(광운대학교 정석재 기획처장 입실함)

□ 제2024-38호: 광운대학교 2025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변경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38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2025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	---	--	---

□ 제2024-40호: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기금 적립 및 인출 계획 변경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40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기금 적립 및 인출 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기 위한 건임을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024-41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41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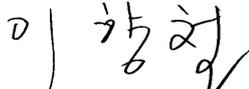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향철 이사는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 시 책임소재에 대한 검토와, 교원의 질병으로 인한 명예 퇴직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융합전공 운영의 경우,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교원 명예퇴직 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는 추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답변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안 건	심의결과	시행·폐지일자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10.23.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10.23.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10.23.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폐지(안)	원안가결	2024.10.23.
직원 명예퇴직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10.23.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10.23.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4.10.23.
감사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10.23.

간서명			
-----	---	--	---

□ 제2024-42호: 법인 및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에 관한 건

- 1) 법인 고정자산 변동(안)
- 2)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42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세원 간사는 법인 고정자산(교육용 기본재산) 변동(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향철 이사는 광운대학교 고정자산의 가치 평가 및 매각 자산의 예상금액에 대해 질의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이 매년 고정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매각 자산의 예상금액은 관련 학과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답변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안)
 - 불용 대상 장비

품명 및 관리번호	제작번호	모델명	수량	취득금액(원)	취득일	설치장소	사유
NMR기기 20180200 170001	NM1648002 440244	JNM- ECZ400S	1	162,365,979	2018.02.26.	비마관 711	파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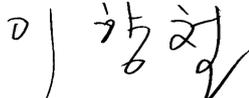
- 매각 대상 장비

- 1) 제품명: Ultra High performance 400 MHz NMR spectrometer
- 2) 모델명: JEOL MODEL JNM-ECZ400S
- 3) 매각 예상금액 : 약 25,000,000원

- 법인 고정자산(교육용 기본재산) 변동(안) : 불임1

※ 불임1 : 고정자산(교육용 기본재산) 변동(안) 신·구조문 대비표

(광운대학교 정석재 기획처장 퇴실함)

간서명			
-----	---	--	---

□ 제2024-43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43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배흥기 감사의 임기만료 예정에 따른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참석이사 전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법인 추천 위원 4인에 대해 논의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선임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제2024-44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44호 안건을 상정하고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이향철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붙임2]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 붙임2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제2024-45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45호 안건을 상정하고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이향철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붙임3]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 붙임3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간서명	조선영	이종민	이향철
-----	-----	-----	-----

□ 제2024-46호: 광운초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1) 교장 명예퇴직 제청(안)
- 2)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46호 1) 안건을 상정하고 광운초등학교 교장의 명예퇴직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광운초등학교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임용사항		비고
			내용	일자	
광운초등학교			명. 명예퇴직	2025.02.28	

조선영 의장은 제2024-46호 2) 안건을 상정하고 광운초등학교 교장의 명예퇴직 제청(안) 의결에 따라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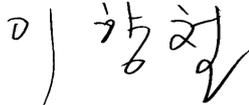
▪ 광운초등학교 교장 자격인정(연수)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학교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일자	비고
광운초등학교	교감			광운초등학교	교장	2025.03.01.	

□ 제2024-47호 :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47호 안건을 상정하고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이 증 민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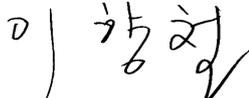
▪ 법인 인사소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위촉사항	위촉기간	비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및 교감(직무대리) 임용 후보자 심사 초·중등학교 신규교사 채용 면접심사 	2024.10.23. -2025.08.31.	

조선영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안건 제2024-46호 1)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비공개 처리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6. 폐회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4시 30분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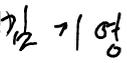
간서명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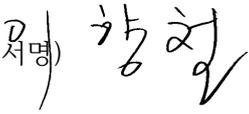
이 사 이 종 수 (서명) 불참

이 사 이 종 민 (서명)  이 종 민

이 사 김 기 영 (서명)  김 기 영

이 사 김 영 만 (서명)  영 만

이 사 배 일 환 (서명) 불참

이 사 이 향 철 (서명)  향 철

이 사 류 희 근 (서명)  류 희 근

감 사 배 흥 기 (서명)  흥 기

감 사 이 동 훈 (서명)  동 훈

2024.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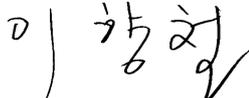
간서명		이 종 민	이 향 철
-----	---	-------	-------

법인 고정자산(교육용 토지) 변동(안)

■ 법인 고정자산(교육용 토지) 변동내역

구분	전기이월 (2023회계연도)			증감내역			변동 후 (2024.03.20.)			비고
	지번	면적 (㎡)	장부가액 (원)	지번	면적 (㎡)	장부 가액 (원)	지번	면적 (㎡)	장부가액 (원)	
광운 인공지능고 ·광운중	월계동 497-6 외 3필지	27,711	9,297,466,000	-	-	-	월계동 497-6 외 3필지	27,711	9,297,466,000	
남대문중	장위동 322-1	6,125	750,567,600	-	-	-	장위동 322-1	6,125	750,567,600	
광운초	장위동 322-1 외 3필지	9,753	694,956,700	장위동 156-4	-124	-	장위동 322-1 외 1필지	9,510	694,956,700	
				장위동 270-471	-129	-				
				장위동 322-1*	10	-				
남대문중 ·광운초	장위동 322-1	228	-	장위동 322-1*	-10	-	장위동 322-1	218	-	
합 계		43,817	10,742,990,300	-	-253	-		43,564	10,742,990,300	

* 구 지번 : 장위동 128-1 (10㎡)

간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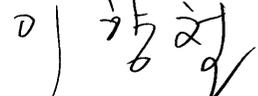
■ 광운초·남대문중학교 교육용 기본재산(교지) 변동 결과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 전					교육용 기본재산 교환 완료 후					비교증감 면적(m ²)	비 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교육용토지 (남대문중)		124-1 ^(주1)	학교용지	1,626	교육용토지 (남대문중)		322-1 ^(주2)	학교용지	6,125	125	
		126 ^(주1)	하천	1,888							
		127 ^(주1)	하천	1,399							
		133 ^(주1)		215							
		128 ^(주1)		872							
소계				6,000	소계				6,125	125	
교육용토지 (광운초)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28 ^(주1)	학교용지	2,698	교육용토지 (광운초)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322-1 ^(주2)	학교용지	9,428	-115	128에서 분할
		130 ^(주1)		433							
		131 ^(주1)		486							
		133 ^(주1)		2,517							
		127 ^(주1)		551							
		129 ^(주1)		1,286							
		132-1 ^(주1)		1,072							
		132-2 ^(주1)		582							
소계				9,625	소계				9,510	-115	
기본재산		128-1 ^(주1)		10							
소계				10	소계				9,510	-115	
-	-	-	-	-	교육용토지 (광운초· 남대문중)		322-1 ^(주2)	학교용지	218	218	학교경계 현황 반영에 따른 증가
-	-	-	-	-			소계		218	218	
합계				15,635	합계				15,853 ^(주3)	228	

주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말소

주2)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 (장위동 322-1)

주3) 교육용토지 총 면적 15,853m² = 17,458m²(장위동 322-1 총 면적) + 82m²(장위동 128-2) - 1,687m²(장위동 322-1 수익용토지 면적)

간서명			
-----	---	---	---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 사장이 집행한다.

제12조의 3(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2. 감사 2인

②·③ (생 략)

④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생 략)
-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② (생 략)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④·⑤ (생 략)

제24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 해당 -----
-----.

제12조의3(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
-----.

- 1. --- 8명(이사장 1명)-----
- 2. --- 2명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범위 -----
-----.

제23조(임원의 임기) -----
-----.

- 1. (현행과 같음)
- 2. ----- 다만, 한 차례만 -----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3분의 2 이 상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

-----이하 “추천위원회”라 -----
-----.

② (현행과 같음)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회
-----	---	-------	-------

③ 사 제

제24조의 3(개방이사의 자격) 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24조의 4(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생략)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3.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인

③·④ (생략)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생략)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라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자격) ① ----- 사람

② ----- 사람

③ 「사립학교법」 제22조----- 사람

제24조의4(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9명-----

- 1. ----- 사람 4명
- 2. ----- 사람 3명
- 3. 초·중등학교 ----- 사람 2명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 1명----- 사람이

간서명	[서명]	이종민	이행철
-----	------	-----	-----

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관하여는 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③ (생략)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어야 -----.

⑥ ----- 1명 ----- 추천하는 사람을 ----- 24조의 2를 -----.

⑦ ----- 사람에게 대하여 ----- 받아야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라 ----- 지체 없 -----.

제29조(감사의 직무) -----.

1.·2. (현행과 같음)

3.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 경우에 이사회 -----

5. ----- 재산 상황 -----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 법인 -----.

간서명		이종민	이행철
-----	---	-----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의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의 2(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의 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은 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 략)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직제, 인사, 급여, 회계, 자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5. (생 략)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생 략)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생 략)

제32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 법인 -----
----- 교원이나 그 밖의 -----

③ ----- 법인의 직원(법인 ---
----- 교원이나
그 밖의 -----

제30조의2(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법인의 -----

----- 법인 -----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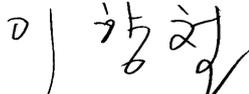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 취
득·처분-----
2. ----- 개정·
폐지-----
3. 법인-----
4. 5. (현행과 같음)
6. ----- 중요 사항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

② -----
----- 해당 이사회에서 회
의록의 -----

간서명			
-----	---	--	---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2. (생략)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생략)

제 4 장 수익사업

제35조의 2(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2. (생략)

3. 부동산 임대

4. 체육·문화시설의 운영 및 임대

9. 10. (생략)

제35조의 3(수익사업의 명칭) 제35조의 2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4. 광운에셋

7. 동해빌딩

8. (주)광운홀딩스

제35조의 4(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5조의 3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광운에셋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24-2

7. 동해빌딩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47

8. (주)광운홀딩스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 어느 하나에 -----
-----.

1. 2. (현행과 같음)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
- 어느 하나에 -----

-----.

1. -----
----- 요구할 -----

2. 제29조제4호에 따라 -----
요구할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수익사업

제35조의2(수익사업의 종류) -----

-----.

1. 2. (현행과 같음)

3. ----- 개발 및 임대사업

4. ----- 임대사업

5. 6.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35조의3(수익사업의 명칭) 제35조의2 -----

-----.

1. (현행 제4호와 같음)

2. (현행 제7호와 같음)

3.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5조의4(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5조의3 -----

-----.

1. 광운에셋: -----

2. 동해빌딩: -----

3. (주)광운홀딩스: -----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화
-----	---	-------	-------

제35조의 6(관리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산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원

제1관 임면

제39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되되 대학교의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초·중등학교 초빙교장의 경우 이 법 제44조의2 교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자의 임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65세를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임기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제39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용권 중 동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제35조의6(관리인 등 수익사업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

제5장 해산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

----- 그 밖의 -----.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

----- 한 차례만 -----.

② ----- 제44조의2 -----
----- 사람의 -----.

③ 법인의 -----
관계인 사람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
----- 임용될 -----.
----- 이사 정수 -----
----- 받은 사람은 -----.

1. 2.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 -----.

1. (현행과 같음)

간서명		이종민	이행철
-----	---	-----	-----

2. 대학교원의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3. (생략)
- ② 제1항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임용한다.
- 근무기간
 -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부교수,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보수: 광운대학교 교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에 관한 사항
 - 업적 및 성과: 교육실적, 연구실적 및 봉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대학교원의 임용권자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 ④ 대학교원의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기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대학교원의 임용권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 대학 교원의 근무기간 종료 시 재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 ⑥ (생략)
- ⑦ 대학의 장이 제2항의 교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⑧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9조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의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2. 대학 교원-----
3. (현행과 같음)
- ② ----- 따른 대학 교원-----
-----.
- - 교수: -----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조교수: -----
 - 보수: ----- 따른 -----
 - 근무조건: -----

 - 성과: -----

 - 절차: -----

 - 그 밖에 총장-----
- ③ 대학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 제2항에 따른 -----
-----.
- ④ 대학 교원-----
-----.
- ⑤ 대학 교원----- 따라 -----

-----.
- ⑥ (현행과 같음)
- ⑦ -----
----- 교원인사위원회-----
-----.
- ⑧ ----- 대학의 장으로 --
-- 사람이 -----
--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 ⑨ ----- 각급 학교 -----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령
-----	---	-------	-------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

⑪ (생략)

⑫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초·중등학교의 장(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경우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39조의 3(교원의 임용보고) 제39조, 제39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4(전형결과 공개)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 5(기간제 교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교원이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사립학교법」 -----
-----.

⑩ (현행 제11항과 같음)

⑪ -----

----- 「교육공무원법」 -----.

제39조의3(교원의 임용보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전형결과 공개) ① ----- 각급 학교-----
-----.

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

제39조의5(기간제교원) ① ----- 어느 하나에 ----- 있을 때에는 ----- 사람 중 ----- 임용하는 교원(“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
-----.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불가피할 -----
2. ----- 불가피할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간서명		이종민	이행철
-----	---	-----	-----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제40조, 제44조 내지 제46조, 제59조의 3, 제60조, 제61조, 제62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완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의6(의원면직의 제한) ①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 필요할 때 -----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 범위 -----

<삭 제>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 어느 하나에 ----- 원하면 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의사와 관계없이 ----- 원하면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2. ----- 따른 -----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화
-----	---	-------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 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
----- 경우
 5. ----- 해외 유학 -----
----- 연수를 ----- 경우
 6. -----

----- 고용되는 경우
 7. -----

----- 경우
 - 7의2. -----

- 입양하는 -----
 8. -----
----- 경우
 9. ----- 요양이 필요한
----- 부모를 간
호하기 ----- 경우
 10. ----- 국외 근무 -----
----- 경우
 11. -----

----- 경우
- 제41조(휴직의 기간) -----
-----.
1. 제40조제1호 -----
-----.
 2. 제40조제2호 -----
-----.
 3. 제40조제3호 -----
-----.
 4. 제40조제5호 -----
-----.
 5. 제40조제6호 -----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령
-----	---	-------	-------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40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7. 제40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4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② (생략)

-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 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0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제40조제7호-----
-----.
- 6의2. 제40조제7호의2-----
-----.
- 7. 제40조제8호-----
-----.
- 8. 제40조제9호-----
-----.
- 9. 제40조제10호-----
-----.
- 10. 제40조제11호-----
-----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40조제3호-----
-----.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

- ② 제40조제7호 -----
----- 국공립 -----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화
-----	---	-------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제2호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4조의 2(교원의 정년) ①·② (생략)

③ 삭제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 경우-----

4. -----

----- 경우-----
-----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
-----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 사람에게는 -----
-----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④ -----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 부과 -----.

⑥ -----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

⑦ 제4항에 따라 ----- 사람의 -----.

제44조의2(교원의 정년) ①·② (현행과 같음)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화
-----	---	-------	-------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 2(명예퇴직 수당) ① 본 법인산하에서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초·중등 교원의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연금법상의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신 설>

제46조의 3(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제46조의 4(후임자 보충발령유예) (생략)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9조의 2 제1항에 의한 교원 임용의 심의, 제3항에 의한 교원 임용계약조건의 심의, 제7항에 의한 교원 임용 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
- 형(刑)의 ----- 「사립학교법」에
서 -----

----- 휴직이나 ----- 불리한 처분을 받
----- .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직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사직----- .

제46조의 2(명예퇴직 수당) ① 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
--- 근속한 사람이 --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
----- . 다만, 초·중등학교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재직기
간----- .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
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
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
해서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 3(특별승진) -----
사람이 제46조의 2에 따라 -----
----- 임용할 ----- .

제46조의 4(후임자 보충발령유예) (현행과 같음)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각급 학교의 교원(학
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
-----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
----- .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
----- .

1. 제39조의 2 제1항에 따른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원 임용 계약조건--
-----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원 임용 제
청-----

2. 그 밖에 -----

② 초·중등학교-----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혁
-----	---	-------	-------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사위원회가 제3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생략)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대학의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의 교원으로 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10학급 이하 학교 : 3인

2. 20학급 이하 학교 : 5인

3. 21학급 이상 학교 : 7인

② (생략)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④ (생략)

제52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략)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③ -----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 제1항에 따른 ----- 고려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에 -----

4. (현행과 같음)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10명 ----- 초·중등학교 -----

1. ----- 학교: 3명

2. ----- 학교: 5명

3. ----- 학교: 7명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 해당 -----

② ----- 업무를 총괄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 해당 -----

② ----- 2명 -----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혁
-----	---	-------	-------

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단서 신설>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신 설>

제54조(운영세칙) -----
----- 해당 -----
-----.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
--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
--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
-----.

1. ----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
----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 의무를 ----- 게을리하였을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
-----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1개월 이상 3개월 -----
----- 사람은 -----
----- 종사할 수 없으며 -----
-----.

⑤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

⑥ --- 전과(前過)----- 뉘우치게 ---.

제55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혁
-----	---	-------	-------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 항 제2호의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 해당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2.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

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6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6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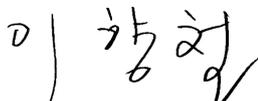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징계사건 및 그 밖에 ----- 의하여 법인에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 법인의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간서명			
-----	---	--	---

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 마. (생략)

③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3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제>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6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3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간서명		이 증 민	이 행 혁
-----	---	-------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생략)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범위에서 한 번만 --- 연기---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59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 교원징계위원회 -----
----- 있다고 인정할만한 -----
----- 신청할 -----
-----.

② 제1항에 따른 -----
----- 기피 여부-----
-. -----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
-----.

③ 제59조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 2 이상-----
-----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제59조의3(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55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

간서명		이종민	이행철
-----	---	-----	-----

제59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심의할 때 하기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제61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 하여야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삭 제>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화
-----	---	-------	-------

⑤ (생략)

<신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1조의2(징계의결 재심의)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1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59조·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3항·제6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우수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간서명		이종민	이행환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감사원의 조사 또는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생략)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 4 절 사무직원

제79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
-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

③ -----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

----- 하 -----
----- 였을 때----- 지나거나 그 남은 -----
----- 기간이 3개월 -----
----- 3개월 이내에 -----
-----.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제63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64조(운영세칙) -----
----- 해당 -----
-----.

제3절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79조(자격)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사람은 사무직원(이하 -----
-----.

- 1. 피성년후견인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혁
-----	---	-------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 사람
- 6. -----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일반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화
-----	---	-------	-------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②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0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근속 승진, 승급,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1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초·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 관한 40조 내지 44조와 제46조 내지 제46조 4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신 설>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
----- 면허증, 그 밖에 -----
----- 인사규칙으로 -----

③ -----
----- 당연히 -----

제80조(임용) ① -----

----- 파면(이하 "임용" -----

② 제1항에 따른 -----

③ -----
----- 해당 -----

제81조(복무) -----
----- . 다만, 초
· 중등학교 -----

제83조(신분보장) -----
-----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6조4 ----- . 이 경우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제83조의2(명예퇴직 수당) ① 법인 및 각급 학교에서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화
-----	---	-------	-------

제83조의 2(직원의 정년) ①법인 직원과 각급학교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단, 초·중등학교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1. 직원: 만61세

②직원은 그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단,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4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후단 신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5조(법인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 (생 략)

제85조의 2(화도기념사업회) ① (생 략)

②화도기념사업회의 설립자기념관 및 묘역관리에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학교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83조의3(직원의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다만, 초·중등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삭 제>

②일반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 당연히 ---. 다만,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4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일반직원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 일반직원재심위원회-----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85조(법인사무조직) ① ----- 이상의 직원-----.

② ----- 이상의 직원-----.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화도기념사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한 규정-----.

제2절 대학교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혁
-----	---	-------	-------

제86조의 2(학장, 대학원장) ①·② (생 략)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 과대학, 인제니움학부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 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 생을 지도한다.

④ (생 략)

제87조의 2(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 ③ (생 략)

제88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 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 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③ (생 략)

제 3 절 고등학교

제90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 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절 중 학 교

제92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각각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 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절 초등학교

제94조(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 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86조의2(학장, 대학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단과 대학 -----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 ③ (현 행과 같음)

제88조의2(산학협력단) ①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절 고등학교

제90조(교장 등) ① ----- 1명과 교감 1 명-----

② -----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 며, ----- 지도·감독하고, 학생 을 교육-----

③ -----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 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4절 중학교

제92조(교장 등) ① ----- 1명과 교감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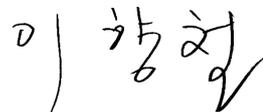
② -----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 며, ----- 지도·감독하고, 학생 을 교육하고 -----

③ -----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 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5절 초등학교

제94조(교장 등) ① ----- 1명과 교감 1 명-----

② -----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 며, ----- 지도·감독하고, 학생 을 교육-----

간서명		이 증 민	
-----	---	-------	---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절
제 7 절 정원

제97조(정원) ①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과 같이 한다. 단, 각 급별 세부 정원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전항과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고를 위한, 광운대학교 일반직원의 직급별 세부 정원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98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그 밖에 위한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0조(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6절 삭제
제7절 정원

제97조(정원) ① ---- 각급 학교-----
----- 별표 1----- . 다만-----
----- .

② -----
----- 범위-----
----- .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98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
-----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
----- .

제9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이하 “위원”-----
----- .

② ----- 학생 수는 ----- 학생 수를 -----
----- .

③ ---- 위원 -----
-- 규정(이하 “규정”----- .

제100조(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따라 -----

----- .

간서명		이종민	이행환
-----	---	-----	-----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2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101조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103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생략)

③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생략)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때

4. (생략)

③ -----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 무기명투표 ----- 사람 ----- .

④ ----- 무기명투표 ----- .
----- 지역위원 정수의 2배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03조(위원의 자격) ① -----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을 위반한 ----- .

제10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
----- .

1. (현행과 같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수료 및 전학·퇴학한 때. ----- 졸업·수료한 ----- 학년도 말----- .

3. ----- 연속 회의-----

4. (현행과 같음)

간서명		이 증 민	이 행 혁
-----	---	-------	-------

5. 제104조3항을 위반한 때

②·③ (생략)

제10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생략)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7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제104조제3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 2명 이상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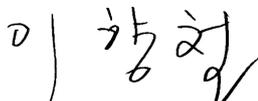
④ (현행과 같음)

⑤ -----
----- 수행
할 -----
-----.

⑥ ----- 공석이 생겼
을 -----
-- 남은 기간-----.

제107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

간서명			
-----	---	--	---

신청에 관한 사항

<신 설>

7. (생 략)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
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생 략)

⑥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
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
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07조제1항
의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② (생 략)

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
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12. (현행 제7호와 같음)

8. 학교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사항

② -----
----- 관한 사항을 -----.

③ -----
- 심의하러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학
생 대표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2조제1항제6호-----

-----.

⑦ ----- 1명 -----
-----.

제108조(건의사항 처리) ① ----- 제107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
----- 심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심의하여 -----

-----.

간서명		이 증 민	이 행 령
-----	---	-------	-------

④ (생 략)

제109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회의소집 등) ① (생 략)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 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제11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생 략)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생 략)

②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생 략)

③ (생 략)

제115조(자문결과의 시행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109조(서류제출 요구) -----
----- 심의 또는 자문-----
-----.

제110조(회의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4분의 1

----- 개별 통지-----

-----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안의 제출·발의) ----- 심의-----

-----.

제113조(회의 공개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학부모-----
----- 있도록 하여
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

1.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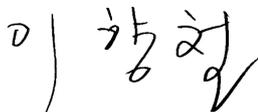
2. -----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
----- 심의 또는 자문 결과-----.

② -----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

간서명		이 증 민	
-----	---	-------	---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2항 및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6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안전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9조(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22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에 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2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

는 ----- 발생 할 ----- 그 밖의 ----- 법 제32조제1항 -----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

③ -----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 지체 없이 ----- 법인 이사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 심의 또는 자문하기 -----.

② 안전심의 또는 자문 -----.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이사회의 지원) 법인 -----.

<삭 제>

<삭 제>

<삭 제>

간서명		이종민	이항희
-----	---	-----	-----

런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삭 제>

제12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26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27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28조(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 신청

<삭 제>

간서명		이종민	이행환
-----	---	-----	-----

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130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1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132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3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제 10 장 대학평의위원회

제10장 대학평의위원회

간서명		이종민	이항환
-----	---	-----	-----

제134조(대학평의회 설치) ① (생 략)

제135조(평의원의회의 구성) ① 평의원은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6조(평의원의 위촉)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②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37조(평의원의회의 의장 등) ① 평의원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③ (생 략)

제138조(평의원의회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9조(평의원의회의 기능) 평의원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장 보칙

제141조(광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43조(청렴의무 등) ① 법인 및 각급학교의 임원

제134조(대학평의회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35조(평의원의회의 구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
--

② ----- 구성단위
중 --- 구성단위에 -----
-----.

제136조(평의원의 위촉) ① -----

----- 사람을
-----.

② ----- 사람
은 -----.

제137조(평의원의회의 의장 등) ① -----
----- 1명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8조(평의원의회의 임기) ① -----
----- 학생인 -----
-----.

② ----- 전임자 임기의 남은 ---
-----.

제139조(평의원의회의 기능) -----

-----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 밖에 -----
----- 회의에 부치는 ---

제11장 보칙

제141조(광고) ----- 그 밖에 -
----- 따라 -----
-----.

제143조(청렴의무 등) ----- 각급 학교 -----

간서명		이 증 민	이 행 령
-----	---	-------	-------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3조의 2(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4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제143조의2(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 법인--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광운대학교 「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46조의2”를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83조의2”로 한다.

간서명		이 증 민	이 항 화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학교법인 광운학원 <u>정관시행세칙</u>	학교법인 광운학원 <u>정관 시행세칙</u>
제1조(목적) 이 세칙은 <u>학교법인 광운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u> 정관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u>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42조----- -----.
제2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u>당해학교</u> 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u>학교법인 광운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u> ----- ----- <u>해당 학교</u> -----.
제3조(재산목록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u>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u>	제3조(재산목록의 비치) ----- ----- 「 <u>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u> 」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다.
제4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취득 시에는 사전에 취득목적 및 기대효과, 규모, 위치, 추정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방법과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재산의 취득) --- 제6조제2항----- -----.
제5조(임원의 임기)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 제23조에 따른 ----- -.
제6조(이사회 심의·결정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이사회 심의·결정사항) ---- 제31조제2항----- -----.
1. 제1호의 ‘ <u>재산</u> ’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관리’라 함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1. 제1호의 ‘ <u>재산</u> ’----- -----.
2. 제6호의 ‘ <u>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u>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2.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기타</u>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	마. <u>그 밖에</u> -----

간서명		이종민	이행철
-----	---	-----	-----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국고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근속승진 임용) ① 초·중등학교의 일반직 8급 이하 일반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6~7년6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① 이 법인 산하에서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을 요하는 자는 신청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하며,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지급절차는 각급학교 명예퇴직 규정을 적용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대상은 인건비 국고보조기관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각급기관의 규정 적용기준 등) ① 법인 및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정관 및 동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산하기관별로 직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법인 일반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② ----- 따라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
----- 범위 -----.

제15조(근속승진 임용) ① ----- 7급 이하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 근무하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각급기관의 규정 적용기준 등) ① -----

----- 범위 -----.

② -- 직원 -----.

제20조(권한의 위임) ----- 정관 시행 및 법인 운영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이종민	이항환
-----	---	-----	-----